

① 개정개요

개정 전	개정 후
<input type="checkbox"/> 종업원 급여총액의 범위 제외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소득세법의 비과세 대상 급여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출산전후휴가기간, 육아휴직 기간 급여 등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 신설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출산전후휴가자, 육아휴직자 대체 근로자 급여

□ 개정내용

- 출산전후휴가자 또는 육아휴직자가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그 종업원의 업무를 대신하기 위해 채용된 근로자가 그 업무를 대신 하는 기간 동안 받는 급여를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공제

□ 적용요령

-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경우부터 적용

I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